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4. 4. 30.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4월 9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 소멸 및 감면 적용 시한 만료로 불필요한 감면 규정 폐지 및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면 유지하고자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안 제4조의2)

○ 현행 조례 제1조 ~ 제18조 적용시한을 2026.12.31.까지 연장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이 소멸하고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익이 없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를 삭제함.
- 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 안 부칙 제3조(적용시한)에서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함.

○ 검토 결과

- 현행 조례 제4조의2는 코로나19로 인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 등에 관한 감면 조항으로 2022년 4월 7일 신설된 바 있음. 그러나 2023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관내 5개소에 임시로 설치하였던 선별진료소가 철거되었으며,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됨.
- 아울러, 해당 조항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신설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일몰제로 감면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추후 감염병에 따른 감면 사항은 제한된 일부에 감면을 해주는 “간접 방식”보다는 지방세수 변동에 수반하지 않는 “직접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짐.
- 적용시한이 도래하기 직전 3년간(2020년~2022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은 3,898천 원으로 법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區)의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비율은 1.6%로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전전년도(2022년) 지방세 징수 결산액에 1.6%를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감면 규모 또한 적합하다고 여겨짐.
- 아울러 조례의 지방세 감면시한이 '23.12.31.자로 만료되어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법에 따라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감면사항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3.12.31.까지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제251회 임시

회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있어 보임.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례 제9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감면 및 세액공제가 이미 적용된 건이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23 호
----------	---------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 소멸 및 감면 적용시한 만료로 불필요한 감면 규정 폐지 및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면 유지하고자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4조의2)
- 나. 현행 조례 제1조 ~ 제18조 적용시한을 2026.12.31.까지 연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lt;삭 제&gt;</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내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연장에 의한 감면(24,071천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연장에 의한 감면(24,071천원)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293천원)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22,778천원)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유미진
연 락 처	02-2670-3251